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 2012년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조한 가입률, 중도인출 증가 등으로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적립금이 이전·적립(연속성 기능)되지 못하여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에 보고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상의 연속성(Portability) 관련 규정과 이에 기초한 운영 실태를 살펴본 후, 미국 등과 연속성 제도를 비교·평가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연속성(Portability) 제도임
 - 법정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적립금 등을 IRP로 이전하여 노후의 연금재원을 확보하는데 IRP 제도의 목적이 있음
 - 정부도 IRP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2017년에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가입자 등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함
- 통계청의 연속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조한 추가가입, 이직 시 퇴직금의 IRP 이전 미흡, 과도한 중도인출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IRP 비중은 10.1%에 불과함
 - 55세 이후 퇴직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로 편입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이전 의무화 규정 미비로 IRP의 노후자산축적 기능이 미흡함
 - 또한 미국 등에 비해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해당 사유별로 중도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중도인출에 따른 연금재원(IRP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IRP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속성 관련 제도 검토가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IRP 가입의무화 연령을 장년의무화 연령인 60세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일시금을 IRP로 자동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IRP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이 없는 국민(예: 학생, 전업주부 등)들에게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
 - 코로나 환경을 고려해 중도인출 범위 및 사유를 탄력적으로 가져가되 향후 연금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 사유별 한도 설정 등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2년에 시행된 IRP(개인형 퇴직연금)¹⁾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연속성(이관성, 통산성)²⁾ 제도임
 - 따라서 법정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적립금 등을 IRP로 이전하여 노후의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데 제도의 목적이 있음
 - 정부도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문제점을 보완한 IRP를 도입함
 - 또한 2017년에는 근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단기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으로 IRP 가입대상을 확대함
- 그럼에도 퇴직급여 제도 간의 연속성 결여, 중도인출에 따른 해지 등으로 IRP의 노후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대두됨
 - 반면 미국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속성(Portability) 수준이 높아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23%(2019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IRP 도입 8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IRP가 어떻게 운영되고 연속성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 검토가 요구됨
- 이에 보고는 근퇴법 및 시행령상의 연속성 관련 규정과 적용실태 등을 살펴본 후, 연속성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

1)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기업형 IRP, 개인형 IRP(퇴직 IRP, 적립IRP)로 구분되지만 여기에서는 IRP특례인 기업형 IRP를 제외한 개인형 IRP를 의미함
 2) 연속성(Portability)은 퇴직급여제도 간 연계뿐만 아니라 유지도 포괄하는 의미임(제도의 연속성). 과거 일본식 용어인 이관성 또는 통산성(통산기능)의 용어는 단순히 물건을 옮긴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최근 학계에서는 사용을 자제함
 3) 퇴직자산 중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자산(23.3조 달러) 중에서 개인형 퇴직연금(11조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함(ICI(2020), 60th edition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2. 연속성 관련 규정 및 실태



가. 연속성 관련 규정

- **현행 근퇴법 및 시행령(이하 '퇴직법령'이라 함)상 퇴직연금 연속성 관련 규정은 크게 ①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② 가입범위 확대를 통한 이전, ③ IRP 중도인출 제한 등이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현행 우리나라 퇴직법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아·전직) 그 수령 적립금을 IRP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간 연속성을 강화함**

〈표 1〉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관련 규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근퇴법 시행령
제17조(급여종류 및 지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IRP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9조(IRP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예외사유) 법 제17조 제4항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가입자가 지정한 IRP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정리함

- (IRP 이전 원칙)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근퇴법 제17조 제4항)
 - 다만, 가입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IRP 이전 예외) 한편, IRP 퇴직연금은 정년, 퇴직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긴급성, 소액적립액일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의 이전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근퇴법 시행령 제9조)
 - 즉, ①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③ 퇴

직급여가 일정액 이하(300만 원)인 경우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입범위 확대를 통한 IRP 이전) 2017년 근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 IRP 가입대상을 자영업자, 단기근로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까지 확대함⁴⁾

● (가입범위 확대 이전) 2017년 7월 25일까지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만⁵⁾ IRP 가입이 허용됨

〈표 2〉 가입대상 확대를 통한 이전 관련 규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근퇴법 시행령
제24조(IRP 제도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IRP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P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IRP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IRP 퇴직연금제도의 부담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제16조의 2(IRP 퇴직연금제도 설정대상)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 3.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제17조(IRP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납입한도)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800만 원을 말한다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정리함

■ (IRP 중도인출 제한) 퇴직법령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에 대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립금을 중도인출⁶⁾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시에는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4) 연간 1,800만 원(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음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11),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6)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적립금 상환 의무가 없는 반면, 담보대출은 적립금 상환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도인출이 노후재원의 소진가능성이 높음

〈표 3〉 IRP 중도인출 관련 규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근퇴법 시행령
제24조(IRP 제도 설정 및 운영 등) ④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준용한다 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권 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IRP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② 법 2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무주택자로 본인명으로 주택구입 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시(1회 한정)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 시(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 부담) 4. 가입자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해당 시

자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2019. 10) 등에 의거 작성함

나. 연속성 적용 실태⁷⁾

- 여기에서는 IRP 가입 현황(인원, 적립금)에 대해 살펴본 후 진출한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입범위 확대를 통한 이전, IRP 중도인출 예외 규정 등을 적용하여 나타난 운영 실태를 살펴봄
- (가입 현황) 먼저 IRP 가입인원 측면에서 보면 전체 IRP 가입자(2018년 말 기준)는 171만 2천 명 수준에 이르고 남성우주의 가입 경향(62.8%)을 나타냄(표 4) 참조
 - IRP 가입자 수는 2015년 74만 7천 명, 2016년 77만 8천 명에서 가입범위 확대 이후인 2017년에는 131만 4천 명, 2018년에는 171만 2천 명 수준으로 급증함
 - 연도별 가입자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2%, 2017년 68.8%, 2018년 30.3%로 나타남
 - 2016년부터 여성의 가입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가입비중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7) 연속성 적용 실태는 통계청(2016~2019), 『퇴직연금통계』(2019년의 통계는 2020년 말에 발표되어 적용실태 분석에서는 제외) 및 금융감독원(201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등을 활용하였음

〈표 4〉 IRP 퇴직연금 가입자 수 및 비중(성별기준)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남자	476,807 (63.8)	502,654 (64.6)	832,219 (63.3)	1,074,566 (62.8)
여자	270,429 (36.2)	276,000 (35.4)	482,189 (36.7)	637,777 (37.2)
합계	747,266 (100.0)	778,654 (100.0) <4.2>	1,314,408 (100.0) <68.8>	1,712,343 (100.0) <30.3>

주: ()안은 가입자의 성별 비중을, < >안은 전년대비 가입자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6~2019), 『퇴직연금통계』 등에 의거 작성

■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우리나라의 IRP 퇴직연금 적립금은 아직 과정에서 자유로운 해지로 인해 퇴직연금 재원이 소진되어 IRP의 연속성 기능이 미흡함

- 우리나라 평균근속기간은 2019년 기준 6.7년⁸⁾을 고려하면 생애근로기간 동안 4~5회 정도 이직을 경험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 적립금은 IRP 계정으로 이전됨
-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는 대상자 규모는 2018년 기준 83만 7천 명이며, 그 이전 금액은 12조 5천억 원이며, 그중 86.9%(10조 8천억 원)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IRP 해지에 따른 패널티 부재 등 퇴직적립금 보존 정책의 부재로 이직 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에 축적되지 못하고 대부분 해지되는 것으로 이해됨

〈표 5〉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IRP 이전		IRP 해지*		
	이전인원	이전금액	해지인원	해지금액	
2015년	784,530	106,649	717,155	94,699	(88.8%)
2016년	788,389	106,801	739,807	105,762	(99.0%)
2017년	779,187	114,529	749,625	100,726	(87.9%)
2018년	836,944	124,825	845,943	108,470	(86.9%)

주: 1) IRP 해지는 이전한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당해연도의 이전인원 수보다 많을 수 있음
 2) ()안은 당해 이전금액 대비 해지금액으로 해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 (가입범위 확대 현황) IRP 가입범위 확대로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 의한 추가가입으로 2018년 기준으로 추가 가입자 수는 68만 6천 명, 적립금액은 2조 7억 원으로 나타남

8)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출(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용 5인 이상 부분)」)

- (가입자 수) 추가가입자는 2017년 40만 4천 명, 2018년 68만 6천 명으로 증가함
 - 가입유형별로 보면 자영업자(46.9%),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30.2%), 직역연금적용 근로자(17.4%), 단시간 근로자(5.4%) 순으로 가입함
- (적립금) IRP 추가 적립금은 2018년 기준으로 2조 6,815억 원이며 자영업자(1조 3,554억 원),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7,825억 원) 순으로 적립금액이 높게 나타남(〈표 6〉 참조)

〈표 6〉 가입범위 확대에 따른 IRP 추가 가입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분		합계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직역연금 적용근로자
가입자 수	'17년	404,079	198,793	25,519	104,658	75,109
	'18년	685,774	321,836	37,050	207,258	119,630
적립금	'17년	9,786	5,101	463	2,600	1,623
	'18년	26,815	13,554	1,244	7,825	4,192

주: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p 18

■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18년 기준으로 7만 2천 명이고, 인출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수준임⁹⁾

- (중도인출 억제) 중도인출은 한번 실행되면 현실적으로 적립금액이 회복되지 못해 퇴직연금 사각지대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적립액 제고를 위해 중도인출은 억제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
-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금액기준) 주택구입(35.2%),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13.9%) 등 주거관련 비용 충당으로 약 50%가 인출되어 연금재원 소진에 영향을 줌

〈표 7〉 퇴직연금 인출사유별 중도인출 현황(2018년)

(단위: 명, 억 원, %)

구분	합계	주택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파산선고	희생절차	기타
중도인출 인원	71,521	25,038	15,185	24,900	166	6,109	123
	(100.0%)	(35.0%)	(21.2%)	(34.8%)	(0.2%)	(8.5%)	(0.2%)
인출금액	25,808	9,086	3,582	12,242	17	809	71
	(100.0%)	(35.2%)	(13.9%)	(47.4%)	(0.1%)	(3.1%)	(0.3%)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p. 19

9)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사유별 통계만 제시하고 있어 IRP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지는 않음. 다만, 퇴직연금 유형별 중도인출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으로 설명함

■ 이러한 결과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시장점유율)을 보면, 2015년에 비해 1.5%p, 2016년에 비해 1.8%p 증가한 10.1%에 불과함(표 8) 참조

- 앞서 살펴본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은 높은 해지율로, 대부분 해지하고, 가입범위 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IRP 중도인출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IRP 계좌의 연속성 기능은 약해 보임

〈표 8〉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IRP 적립금의 비중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IRP (%)	10.9 (8.6)	12.4 (8.4)	15.3 (9.0)	19.2 (10.1)
퇴직연금 적립금	126.4	147.0	168.4	190.0

자료: 금융감독원(201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등에 의거 작성함

- 반면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총 연금자산 중 IRP¹⁰⁾가 차지하는 비중이 34.0%에 이르고 퇴직연금시장에서 47.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IRP의 노후보장 기능이 강함¹¹⁾
- 이러한 점에서 연속성 제도를 평가하고 IRP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함

3. 연속성 제도 평가



■ 여기에서는 연속성 관련 규정을 적용한 운영실태 결과에 기초해 퇴직적립금 이전, 가입범위 확대, 중도인출 등으로 구분하여 선진국의 연속성 제도와 비교를 통해 평가함

■ (퇴직적립금 이전) 55세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로 편입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해 미국 등에 비해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이 낮은 수준임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적립금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고 인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55세 이후 퇴직자는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임¹²⁾
- 또한 법정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일시금을 IRP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서만 IRP로 이전이 가능한 임의가입형태로, 법정퇴직금제도와와의 연계성이 미흡함

10) 이하에서는 미국의 IRA, 일본의 개인형 기여연금(iDeCo)을 IRP로 통일하여 사용함

11) 연금자산은 IRAs, DC 퇴직연금, DB 퇴직연금, 주 및 지방정부연금, 연방연금, 기타연금 등으로 구성됨(ICI(2020) 참조)

12) 55세 이후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IRP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함

〈표 9〉 퇴직적립금 이전성 측면

구분	한국	외국
퇴직연금제도	- 55세 이전 퇴직자만 이전 의무화 - 정년 60세 규정과도 괴리존재	- 일본은 60세, 미국은 70.5세까지 이전 가능
법정퇴직금제도	- 이전 의무화 규정 부재 · 임의가입 형태(자율적으로 이전)	· 퇴직연금 제도간 연속성 강화

자료: 근퇴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2019); ERISA(2018); 일본기업연금법(2019) 등에 의거 작성함

- 반면에 일본은 60세, 미국은 70.5세까지 IRP로의 이전이 가능해 퇴직연금제도와 IRP 간의 연속성이 높은 수준임
 - 미국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원화로 법정 퇴직금제도 간의 연속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 (가입허용범위 및 유인 측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은 소득이 없는 국민까지 가입을 허용해 전 국민 IRP 가입을 유도함
 -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IRP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IRP 가입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가입 유인 세제도 직업 속성별(자영업자 등)로 차별화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함¹³⁾

〈표 10〉 IRP의 가입허용 및 유인 측면

구분	한국	외국
가입허용범위	-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 대상 · 비소득계층의 가입기회 제한	- 사실상 전 국민 대상
가입유인세제	- 직종과 관련 없이 동일세제 부여 · 700만 원 세액 공제 동일	· 전업주부, 학생 등도 가입 가능

자료: 근퇴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2019); ERISA(2018); 일본기업연금법(2019) 등에 의거 작성함

- 반면 미국 등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등까지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 전 국민의 IRP 가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 근로자 등 직종별로 세제를 차등화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은 전업주부, 학생까지 가입대상을 허용하고, 자영업자, 퇴직연금가입자, 공무원, 전업주부 등 직종별로 차별화된 세제(소득공제)를 부여함¹⁴⁾

13)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고 있는데,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상 소득자는 12%(5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임
 14) 기여단계에서 연간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자는 276,000엔(월 23,000엔), 자영업자는 816,000엔(월 68,000엔)임; 일본 기업연금연합회(<https://www.pfa.or.jp/yogoshu/ki/ki51.html>)

■ (중도인출 등 연금자원 소진 측면) 미국 등은 긴급자금 수요 발생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여 연금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과 같이 중도인출 사유가 포괄적인 경향이 있으나, 미국 등은 사망, 영구장애, 의료비지출 등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함¹⁵⁾

〈표 11〉 중도인출 등 IRP 적립금 소진 측면

구분	한국	외국
중도인출 범위	- 중도인출 범위 포괄적 · IRP 적립금 소진 우려	- 중도인출 사유가 매우 제한적 - 일정연령이전의 인출 금지 · 미국 59.5세, 영국 60세 등
중도인출한도	- 부분 및 전부인출 · 요양비용 등에 대해서만 부분인출	- 부분인출 · 사유별 인출한도 설정
중도해지 제재	- 별도의 제재조치 없음	- 별도의 제재조치 존재 · 패널티세(미국), 55%세율적용(영국)

자료: 근퇴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2019); ERISA(2018); 일본기업연금법(2019) 등에 의거 작성함

- 중도인출 한도 규정이 일부¹⁶⁾에만 설정되어 있어 적립금 전액이 인출될 수 있는 반면, 미국 등은 해당 사유별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어 필요 금액 한도 내에서 부분인출이 이루어짐
 -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시(동일 사업장 내에서 1회),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 시(연금입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의료부담) 등에 대해서만 한도규정이 설정됨
 - 미국 등과 달리 IRP를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수령시 세제상 별도의 제재조치(예: 패널티세)가 존재하지 않아 IRP 적립금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국 IRP의 통산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중도인출 등에 따른 연금재원의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입과 적립문제를 함께 고려한 제도 검토가 필요함

4. 제언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제도 적립금의 IRP로의 이전 부족, 중도인출에 따른 연금자원 소진으로 인해

15) 미국의 경우도 최근 2년 이내의 무주택자에게는 조기인출을 허용하지만 10만불 이상의 조기인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출 시에는 10%의 패널티세를 부과함(<http://www.ICI.org> 참조)
 16) 요양비 및 주택구입에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주택구입의 경우 가입자가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기간 1회에 한정하여 주택구입비로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 이직 시마다 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IRP의 노후보장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가계의 생활자금 부족에 대한 퇴직급여의 활용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나, 무엇보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IRP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첫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60세 정년을 고려해 IRP의 가입의무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에 편입되지 않고, 연금수령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퇴직연금 연속성이 미흡함¹⁷⁾
- 둘째, 법정퇴직금제도의 퇴직적립금이 자동적으로 IRP에 이전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이직 시 법정퇴직금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IRP 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을 자동 가입되도록 하되 OPT-OUT(사후탈퇴 가능)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셋째,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연속성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 국민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IRP 가입 비중이 37%에 불과하므로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학생, 주부 등 전 국민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코로나 환경에 따른 가계의 자금부담 기증을 고려해 중도인출 사유를 탄력적으로 가져가되, 향후 연금재원의 소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인출과 이직 시 인출이 제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계의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후 정상화 상황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별 한도 설정, 이직 시 인출 규제 등 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kiqi**

17) 통계청 조사결과, IRP 이전예의 금액 2조 3천억 원(2018년 기준) 중에서 84.3%인 1조 9,000억 원이 55세 퇴직자의 적립금인 것으로 나타남